

제 호

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

-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명:
- 대표자:
- 소재지:

위 기관(법인 또는 단체)을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7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

